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3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이개호 · 박지원 · 박 정
정준호 · 임오경 · 조인철
전진숙 · 문금주 · 어기구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제61조제1호 본문 중 “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5 및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4. (생 략) <u><신 설></u>	제31조(결격사유)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6의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u> 7.·8. (생 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1조(당연퇴직) ----- ----- -----. 1. -----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 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의5
2. (생략)	2. (현행과 같음)